PARTI 홍콩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가, 현황

[표 1] 국가기본정보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국가 경제정보	
일반사항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A.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면적 : 1,114㎢ (자료원 : Survey and Mapping Office / Lands Department, 2022년 기준)•건국일 : 1949.10.01.(국경일)•인구 : 약 740만명(2021년)•언어 : 광동어, 보통어, 영어•민족 : 한족(95% 이상)•종교 : 기독교(가톨릭 및 개신교 포함)(16%), 불교(13.4%), 도교(13.4%), 무교 및 기타(57.2%)	
정치현황	행정장관: 존 리 (John Lee Ka-chiu) (2022년 7월 1일부터)	
경제현황 (2021년 기준, IMF 추정치)	•GDP: 3,6816억\$ (IMF) •경제규모(PPP): 4,723억\$ (IMF) •1인당GDP: 66,062\$ (IMF) •경제성장률: 6.4% (국가통계국) •실업률: 5.8% •무디스 신용등급: Aa3 •S&P 신용등급: AA+ •피치 신용등급: AA-	

홍콩은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1위를 고수할 정도로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함.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경쟁상대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데 반해서 홍콩은 시장이 주도해서 경제가 성장한 사례이며, 밀턴 프리드먼도 성장하는 홍콩을 보고서 홍콩을 자유방임 경제의 모범적인 모델로 칭찬했을 정도임

경제자유도의 예를 들자면 홍콩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서 통화위원회라는 조직만 있음. 중앙은행 비슷한 역할은 HSBC, 중국은행,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이 셋이 나눠서 맡음. 그리고 법인세와 관세가 없는데다 세율도 엄청나게 낮아서 중국 대륙 부자들이 홍콩에 가서 사는 경우도 많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는 이 중국 부자들이 자산분산을 하려고 이민 문의가 폭증함

그러나 국가 인프라인 홍콩 국제공항, 콰이충 항구, 그리고 홍콩 지하철 및 국철 운영사인 MTR사 등 공공 인프라는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때는 정부가 자본통제에 나서는 등 정부도 간섭할 것은 간섭함. 단지 간섭을 최소화할 뿐임. 이러한 정부의 자본통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휩쓰는 2020년에도 실시하기 시작함

나. 한-홍콩 무역현황 및 사업정보

[표 2]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 (RCEP)	아세 안(ASEAN) 10개국, 한 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2023년 예정	미정	-2022년 1월 가입 신청 - 회원국간 수입 관세 90% 이상 철폐
광동협 정(Guangdong Agreement)	중국	2015.11.27	2019.11.21	-홍콩과 광동성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2. 경제관련 정보

표 3] 홍콩 경제관련 지표 현황 출처: IMF, 해관총서, GTA, 국가통계국, KOTRA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3.79	2.86	-1.19	-6.14	6.4
명목 GDP(십억\$)	341.27	361.73	363.05	344.88	368.14
1인당 GDP(PPP, \$)	59,667.90	62,220.80	61,999.40	59,411.17	66,062
1인당 명목 GDP(\$)	46,025.67	48,310.04	48,274.94	46,437.74	49,727.40
정부부채(% of GDP)	0.1	0.1	0.3	1	2.1
물가상승률(%)	1.5	2.4	2.9	0.3	1.6
실업률(%)	3.1	2.8	2.9	5.8	5.2
수출액(백만\$)	497,579.33	531,162.65	509,641.18	508,745.73	642,572.02
수입액(백만\$)	559,457.38	602,876.25	563,808.05	553,076.68	687,537.82
무역수지(백만\$)	-61,878.05	-71,713.60	-54,166.87	-44,330.95	-44,965.80
외환 보유고(백만\$)	431,358.44	424,537.32	441,250.79	475,266	478,688
이자율(%)	1.35	2.15	2.55	0.91	0.5
환율 (자국통화)	7.79	7.84	7.84	7.76	7.8

해외지식재산가이드북_홍콩

홍콩의 경제는 상당 부분이 서비스업에 의존함. 1차산업과 2차산업은 비교적 약함. 2차산업은 나름대로 흥했을 때인 1950년 대~1970년대 시절도 있었지만 규모가 영세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 한국과 대만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는 값싼 노동력과 어마어만 생산 쪽수를 자랑하는 중국에게 밀려서 사양길을 걸었기 때문임. 슈퍼마켓의 공산품과 식품은 홍콩산은 소수고 중국산과 수입산이 대부분임. 홍콩산은 까우롱유업, 가든제과, 비타쏘이 같은 일부임

일본산이 꽤 많으며 아예 일본산 공산품을 전문으로 파는 얏뿐씽(日本城, Japan Home Centre)이라는 체인점도 있음. 최근에는 한국 산 공산품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종의 수입식품점인 759스토어에는 일본식품과 한국식품의 지분이 비등하며,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이 많음. 1990년대만 해도 홍콩은 메이크업을 본국 영국의 영향으로 서구식으로 선호했으나 2000년대 한류가 범 아시아적으로 유행한 이후에는 한국식을 많이 선호함

금/은 등 귀금속 및 보석상, 그리고 시계상이 굉장히 많음. 중화권/동남아시아 최대의 보석상 체인인 짜우따이푹(周大福, Chow Tai Fook)[19], 짜우쌍쌍(周生生, Chow Sang Sang), 룩푹 보석(Lukfook Jewelry)이 3대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지간한 번화가라면 저 보석상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입주해있음. 그리고 한국 단체관광객이 자주 가는 TSL 역시 보석 및 귀금속 체인점임

홍콩은 도시권(광역권)이 없는 단일 도시란 것을 감안한다면 단일 도시로서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내에 충분히 드는 경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그 외 중국 도시는 상하이가 5,165억 달러로 전체 10위, 베이징이 4,272억 달러로 전체 13위를 기록했고, 톈진은 3,087억, 광저우는 3,204억, 선전시는 3,024억임. 즉 홍콩은 중국 영토 내 3대 경제권 중 하나임. 홍콩증권거래소의 규모는 아시아에서 도쿄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이은 3번째임. 그리고 IPO 개수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덕에 가장 많음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 개요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홍콩에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홍콩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잘 확립돼 있으며, 외국 상품에 대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노골적 침해는 적은 편임

- 홍콩 시장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낮고 인구, 구매력 면에서 시장규모가 작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상품의 상표권 등록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홍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총괄하는 기관은 '홍콩지식산권서(香港知识产权署,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신청 절차 및 각종 양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홍콩은 자유로운 법제도 및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라이선싱, IP 거래 등 지식재산권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Asia IP Exchange(AsiaIPEX)는 홍콩무역발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으로, 홍콩뿐 아니라 국내외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함

나.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1) 특허권

홍콩의 특허권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erm patent)로 나뉘어 있음

- 표준특허: i) 지정특허청에서 우선 등록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받고 홍콩에 형식적 심사를 통해 재등록하거나 ii) 홍콩지식산권서에 직접 출원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 등록하여, 20년간 보호를 받는 특허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특허(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낼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와 의미가 다름)
- 단기특허 : 홍콩지식산권서에 직접 등록출원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8년에 불과함

기존의 표준특허는 아래 3개 지정 특허청에서 인정된 특허 등록(기초출원)을 기반으로 재등록(re-register)을 신청하여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거침.

표준특허 신청은 ① 출원(request to record) ② 등록청구(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 3개 지정 특허청은 아래 중국, 유럽, 영국 특허청을 말함
- ·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the European Patent Office
- · the United Kingdom Patent Office
- 홍콩에서 표준특허를 출원(request for record)하기 위해서는, 지정 특허청이 공고한 해당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홍콩 지식산권서 특허등록처에 제출해야함

이 외에도 표준특허는 지정 특허청에 해당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기초 출원없이, 홍콩에 직접 특허의 출원과 실질심사를 신청하여 출원할 수도 있음

(2) 상표권

홍콩에 기업등록(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해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이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표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등록이 필수임

- 홍콩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 신청해야 하며, NICE 분류에 맞게 분류돼야 함. 적절한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음
-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en
- · http://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trademarks/how_to_classify.htm
- 홍콩 지식산권서에 따르면, 신청부터 최종 공보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됨.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상표권의 계속적 보호를 위해 10년마다 갱신해야 함

(3) 디자인권

홍콩 지식재산권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형식심사만 수행하며 실질심사를 수행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출원서 제출부터 최종 등록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임

- 디자인권 신청을 위해서는 완비된 신청서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필요함
- 한 번에 복수의 디자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로카르노 분류법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되는 관련된 디자인이어야 함

- 디자인권은 기본 5년으로 최대 4번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25년까지 장기간 보호됨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산업재산권 기관

가. 홍콩지식산권서(특허청)

홍콩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각종 행정 절차, 서비스,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홍콩지식산권서(香港知识产权署)임

- 현재 주된 업무는 특허(전리)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업무 및 저작권 라이센스 등록 업무와 각종 지식재산관련 정책 수립 업무임. 또한, 그 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관련 인력 양성 업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등을 담당
- 홍콩 지재권 검색엔진 제공
- Homepage: www.ipd.gov.hk

나. 홍콩 법원

홍콩 사법조직은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하급법원은 매저스트리트(Magistrates)재판소, 지방법원 및 전문법정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상소는 최고법원에서 관할함. 그 위에 반환 이전에는 최종심으로서 영국 추밀원사법위원회가 위치하였음. 반환 후에도 이 체계는 변하지 아니하여, 약간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최종심으로서 대법원(Court of Final Appeal) 홍콩에 설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판결문 제공
- Homepage: www.judiciary.gov.hk

2. 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가. 홍콩 해관

홍콩해관은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을 포함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형사 조치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임. 홍콩 해관은 Copyright Ordinance, Chapter 528, (저작권법) the 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hapter 362 (무역/거래 내용 설명에 관한 법) and the Prevention of Copyright Piracy Ordinance, Chapter 544 (저작권 불법 복제 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소유자 및 합법적인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 홍콩 해관은 상표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와 무역/거래 설명이 허위로 표기되었음을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될 때 조사에 착수함. 홍콩 해관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수색 및 압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해관의 의무는 과세 물품에 대한 수입 징수, 마약 및 위험 약물의 밀매 방지, 소비재의 안전 확인, 특정 수출입 허가증 발급 및 물품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Homepage: www.customs.gov.hk

나. 저작권 라이센스 등록 협회

홍콩지식산권서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라이센싱 협회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와 상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5개 단체임. 홍콩지식산권서에 등록된 라이센싱 협회들은 자신들의 표준 라이센싱 로열티표를 게시하여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저작물의 사용 권한의 범위 및 그 로열티 금액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Hong Kong Limited(홍콩 작곡가 및 작사가 협회)

- 등록 인증번호: 20020001
- 등록 명칭: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HONG KONG LIMITED (香港作曲家及作詞家協會有限公司)
- 주소: 18/F, UNIVERSAL TRADE CENTRE, 3 ARBUTHNOT ROAD, CENTRAL, HONG KONG

• Hong Kong Recording Industry Alliance Limited(홍콩 음반 연맹)

- 등록 인증번호: 20100001
- 등록 명칭 : HONG KONG RECORDING INDUSTRY ALLIANCE LIMITED (香港音像聯盟有限公司)
- 주소: 22/F, SHANGHAI INDUSTRIAL INVESTMENT BUILDING, 48-62 HENNESSY ROAD, WAN CHAI, HONG KONG

• Phonographic Performance (South East Asia) Limited(홍콩 음반 판권 회사) - 등록 인증번호 : 20090001

- 등록 명칭: PHONOGRAPHIC PERFORMANCE (SOUTH EAST ASIA) LIMITED (香港音像版權有限公司)
- 주소 : UNIT A, 18/F, TOWER A, BILLION CENTRE, NO.1 WANG WONG ROAD, KOWLOON BAY, KOWLOON, HONG KONG

• The Hong Kong Copyright Licensing Association Limited(홍콩 저작권 라이센싱 협회)

- 등록 인증번호: 20050001
- 등록 명칭 : THE HONG KONG COPYRIGHT LICENSING ASSOCIATION LIMITED (香港複印授權協會有限公司)
- 주소: ROOM 904, SUP TOWER, 75 83 KING'S ROAD, NORTH POINT, HONG KONG

• The Hong Kong Reprographic Rights Licensing Society Limited

- 등록 인증번호: 20010001
- 등록 명칭 : THE HONG KONG REPROGRAPHIC RIGHTS LICENSING SOCIETY LIMITED (香港版權影印授權協會有限公司)
- 주소: 802 STANHOPE HOUSE, 738 KING'S ROAD, HONG KONG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표 4]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Paris Convention	
	Trademark Law Treaty	
지식재산권보호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Berne Convention
	Geneva Conven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그구버 난송 세계	WIPO Copyright Treaty
글로벌 보호 체계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Nice Agreement

제3절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현황

[표 5] 홍콩 진출시 국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재권 관련 사업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링크)	비고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 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www.ripc.org		
1. 지식재산창출	스타트업 지식재산바 우처 사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위탁기관 미정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P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www.ripc.org		
2.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 화 사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www.kaips.or.kr		
	해외 지식재산센 터(IP-DESK)운영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www.kotra.or.kr		
3.지식재산보호	K-브랜드 분쟁대응 지 원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www.koipa.re.kr		
	특허 분쟁대응 지원	(사전예방)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사후대응)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www.koipa.re.kr		
4. 기타 수출지원 사 업	수출바우처 사업(산 업부)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 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중 기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획득 및 활용에 필요 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 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www.mssmiv.com	중기부	

- ※ 사업분류 1 2 3은 특허청 산하 사업임
- ※ 위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PART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법률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홍콩은 중국과 달리 1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독특한 산업구조와 문화를 쌓아 왔음. 홍콩 산업의 특징은 금융과 쇼핑의 중심지이면서, 영화산업, TV 프로그램, 음반산업, 출판산업, 패션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의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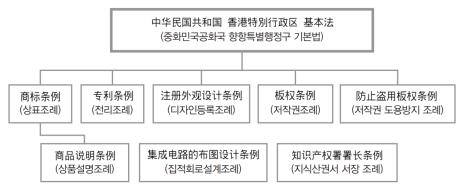
또한, 세계 금융과 국제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고 외국 자본이 홍콩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보호 법률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인식하에 홍콩은 나름대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과 시스템을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음

- 홍콩의 법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라는 일종의 헌법의 기초 위에 구축되어 있음.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에 홍콩 지재권 관련 법령과 중국 제도 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적 차이가 큰 홍콩과 중국 간에 지재권 법령 체제는 현재대로 홍콩과 중국 각각 개별적인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9조 및 제140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홍콩지식산권서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표조례, 전리조례, 디자인등록 조례, 저작권 조례 등으로 제정되었음. 참고로 홍콩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은 모두 법이 아닌 조례와 규칙으로써 규정되어 있음



[그림 1] 중화민국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체계

가. 상표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해당하는 상표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의 제559장에 해당함. 그리고 상표조례의 하부 법령인 상표규칙은 조례집 제559A장에 규정되어 있음. 홍콩 상표조례는 2003년에 큰 개정을 거쳤음. 2003년도 개정을 통하여, part A와 part B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상표출원 제도를 하나의 상표출원 제도로 통합하였으며, 사용주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던 상표법을 중국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주의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였음

나. 전리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14장에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하부 규칙은 제514A장에서 제514C장에 규정되어 있음

다. 디자인등록 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 조례(외관설계등록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22장에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그 하부 법령인 디자인등록 규칙(외관설계 등록 규칙)은 조례집 제522A장에 기재되어 있음

라. 저작권조례(판권조례) 및 저작권도용방지조례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조례(판권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28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권도용방지 조례는 조례집 제544장에 규정되어 있음

2. 최근 개정사항 및 동향 소개

가. 특허법 개정

2019년 12월 19일부터 개정된 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OGP)를 도입

- 홍콩의 특허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구분됨

- 표준특허는 존속기간 20년이 보장되며, 홍콩 외의 지정 특허청(영국. 중국 및 EPO)에서 우선 등록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받고 홍콩에 재등록(re-register)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 표준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이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함
- 단기특허는 홍콩 지식산권서에 직접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최장유효기간은 8년이며 최초 등록 4년 후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됨
- 단기특허도 기존에는 형식 요건만 판단하였으나, 201년 홍콩 특허조례 개정에 따라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제3자는 누구라도 단기특허의 특허성에 대한 발명의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실질심사요청을 등록심사관에 게 할 수 있으며, 출원인 역시 단기특허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원수특허제도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 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출원인은 표준특허를 출원할 시에 원수특허제도와 특허재등록제도 중 선택할 수 있음

■ 기존 특허심사제도(특허재등록제도)와 원수특허제도의 비교

기존 방식인 특허재등록제도에 따르면 국외 지정특허청인 (1) 중국 지식산권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2) 유럽 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 (3) 영국 특허청(UKIPO, 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기초출원 후, 기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홍콩 지식산권서에 제출하여 '출원(request for record)'하고, 형식적 요건을 심사받기 위해 등록청구(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재등록(re-register)'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경우, 홍콩 지식산권서는 서류미비 등 방식심사만 실시할 뿐 특허에 대한 실체검사는 하지 않음.

반면, 원수특허제도는 중국 지식산권국과 기술 협조 하에 홍콩 지식산권서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시행하고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국외 지정특허청의 기초출원 없이도 표준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함

[표 6] 홍콩 특허 유형간 비교 출처 : 홍콩지식산권				
	표준 특허 (원수특허제도)	표준특허 (특허재등록제도)	단기 특허	
존속기간	20년	20년	8년	
기초출원 필요 여부	불요	필요 (지정특허청 : 중국특허청, 유럽특허 청,영국특허청에 기초 출원해야함)	불요	
청구항 개 수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독립항 2개 제한	
형식 심사	홍콩지식산권서가 수행	홍콩지식산권서가 수행	홍콩지식산권서가 수행	
실질심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기술 협조 하 에 홍콩 지식산권서에서 직접 심사	기초 출원한 지정특허청이 수행	실질심사 불요 (단, 제3자 혹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함)	

나. 상표법 개정

홍콩의 상표법은 2003년 4월 4일 발효되어 1873년 통과된 상표법 43을 폐지한 상표 조례 제559호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률에 의해 확립된 제도는 '1국 2제' 정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별개임. 대체된 법과 현재 법은 영국의 관련 법률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WTO/TRIPs 준수에 근거한 유사성임

새로운 법은 상표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거나, 인증 마크, 단체 마크,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거나 확대하는 것, 취소 목적의 미사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절차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등 다양한 실질적이고 절차적 변화를 도입함

2020년 6월 19일에 공고된 상표 개정 조례는 홍콩의 국제 상표 등록(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적용에 대한 홍콩 법률의 기초를 제공함. 홍콩 정부는 개정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절차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 입법 준비, 전용 정보 기술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동의 획득 등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을 위한 관련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마드리드 의정서는 홍콩에서 2022년경, 늦어도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다. 디자인법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 조례(외관설계등록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22장에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그 하부 법령인 디자인등록 규칙(외관설계 등록 규칙)은 조례집 제522A장에 기재되어 있음

- 홍콩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에 대한 도면(7개) 및 신규성에 대한 진술서가 있으며, 만약 중국어로 출원할 경우 번체자를 사용해야 함. 한편, 평면디자인이나 직물디자인의 경우 도면 이외에도 샘플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 개의 봉투나 포장에 담아야 하고, 길이는 30cm, 무게는 4kg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홍콩으로의 디자인 출원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분류표에 근거하여 동일한 류에 속하여 함께 판매되고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한 건의 출원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을 할 수도 있음
- 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인 경우 홍콩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되, 영문 혹은 중문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경우 반드시 중문 혹은 영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홍콩에 디자인 출원을 한 경우 그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매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통해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4차례 연장하여 최대 25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

3. 한 페이지로 보는 지재권 제도

- ·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도의 지재권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국 본토에서 특허 등록받아도 홍콩에서 자동인정이 안됨 (따로 홍콩에서 특허 등록이 필요함)
- · 홍콩에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 제도가 존재함
- · 단기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8년이며, 출원시 서치리포트 제출해야함
- · 표준특허를 출원하려면 '원수특허제도'와 '특허재등록제도' 중 하나의 출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 특허출원시 요약문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출해야하며, 출원인 및 발명인 이름은 중국어 및 영문자 알파벳으로 표기해야함
- · 특허 신규성 예외인정 기간은 6개월이나, 중국이 인정한 박람회, 전시회에 공지한 경우에 한정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지한 경우 홍콩에서 특허권 취득은 거의 불가함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최장 25년임 (우리나라 20년)
- ·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따로 실체심사를 하지 않으며, 별도 유효성 심사평가 없이도 즉시 권리행사 가능 (다만 권리의 유효성은 소송 절차 내에서 다툼)
- ㆍ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의 예비적 판단을 홍콩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음
- · 우리나라와 다르게 홍콩은 방어표장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저명상표가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오인·혼동가능성이 없으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음 (유사판단은 우리나라보다 덜 엄격하며, 따라서 등록가능성

더 높음)

- · 중국본토에서 상표가 저명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님
-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형사조치는 홍콩해관이 담당하여, 지재권 침해는 홍콩해관에 고발할 수 있음 (다만, 위조행위 보고할 때 간이등록절차가 선행되어야함)
- · 홍콩은 자격 없이도 지재권 출원 대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대리인 선정시 지재권 대리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제2절 주요 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 특허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에서 전리권이라고 하면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지만, 홍콩에서 전리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특허를 의미함

하지만, 홍콩에서는 중국 대륙과 달리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라는 특유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는 우선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출원 절차와 등록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재권 제도와 굳이 대응시키자면 존속기간의 장단의 측면에서 표준특허는 특허에 해당하고 단기특허는 실용신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홍콩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는 중국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원 절차 면에서 영국과 중국에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 특허제도와의 차이점

홍콩의 특허제도는 우리나라 특허제도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아래 표에서 우리나라와 홍콩의 특허제도를 비교하였음

[표 7] 홍콩 전리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 비교				
항목	홍콩	우리나라		
심사 여부	무심사(표준, 단기) - 예외1)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해 표준특허 출원하는 경우 심사함 - 예외2) 단기특허의 경우 신청이 있으면 심사함	특허, 실용신안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		
거절결정불복심판	무심사이므로 불복심판 제도가 없으며, 심판원도 존재하지 않음	거절결정을 받을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무효심판	별도의 심판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무효를 다툴 수 있음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무효는 특허심판에 무효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다툴 수 있음		
존속기간	-표준특허 :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날까 지 -단기특허 :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8년되는 날까지	-특허권 :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되는 날까지 -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되 는 날까지		

2. 디자인

홍콩 디자인 보호조례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패턴, 장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완성된 물품에 화체되어 있는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물품의 특징을 의미함.

홍콩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지식산권서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아야 함.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홍콩에서도 자동적으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음

- 중국에서 등록 받은 권리는 중국에서만 유효하며 홍콩지식산권서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이 없다면 홍콩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불가능함.

홍콩의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매우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음. 홍콩에서의 디자인권 출원은 무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등록받은 이후에는 5년마다 존속기간 연장을 해야 함

■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와의 차이점

[표 8] 홍콩 디자인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 비교				
구분	호코	한국		
실체심사여부	무심사	일부 무심사		
출원 후 등록 시 까지의 기간동안의 디 자인 보호				
이의신청 제도	없음	무심사 디자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 운영		
무효심판 제도	없음. 법원에서 판단. 소제기 해야 함	있음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매 5년 씩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	출원일로부터 20년		
침해의 소제기	별도의 절차 없이 소제기 가능, 침해 소송 중 디자인 의 유무효성 심리	무심사라도 소제기 가능 다만 유효성을 다툴 경우에는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함		

3. 상표

홍콩에서의 상표권은 홍콩지식산권서에 상표출원 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받아 심사에 통과할 경우에 획득할 수 있음. 홍콩에서도 상표 권 등록과 회사 등록, 사업 등기 등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주관하는 행정부서도 다름. 상표권의 등록은 홍콩지식산권서에서 주 관하며, 회사 등록이나 사업 등기 등은 홍콩 세무국에서 주관함

해외지식재산가이드북_홍콩

홍콩에서 회사 등록이나 사업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 회사 이름과 사업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회사 이름, 사업 이름에 대한 독점권은 오로지 상표권에 의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홍콩에서 상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함

■ 우리나라 상표 제도와의 차이점

홍콩 상표 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표 제도 상의 특징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홍콩에서 출원한 상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홍콩 상표 제도 상의 특징을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표 14] 홍콩 상표 제도 및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 비교				
	호코	대한민국		
소리, 냄새, 입체 등 특수 상표의 인정	소리, 냄새, 입체 상표 모두 인정	소리, 냄새, 입체 상표 모두 인정		
출원 후 등록 시 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 표 보호	등록일을 출원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출원일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선행 상표와 후행 상표가 동일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의 취급	동일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함 유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 의한 오인·혼동 가능성 을 추가로 요구함	동일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를 같게 취급함		
저명상표의 효력	비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타인의 상표출원의 등록 저지효력 및 비유사한 상품영역에서의 타인의사용 금지 효력 모두 있음	비유사한 상품 영역에 대한 타인의 상표출원의 등 록저지효력만 인정함		
저명상표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	방어표장 제도를 두어 저명상표가 불사용 취소심 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없음		
출원 전 특허청에 의한 등록가능성 판단 서비스	선행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의 예비적 판단 서비 스 제공	없음		

PARTIII 특허·실용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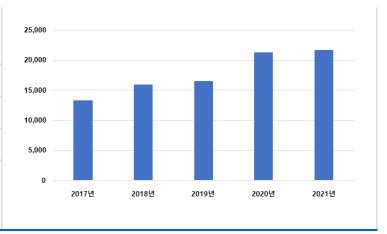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의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0] 홍콩의 특허출원건수		출처: 홍콩 특허청
연도	출원건수	

2017	13,299
2018	15,986
2019	16,521
2020	21,302
2021	21,686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에서 특허 등록된 건수를 살피면 다음과 같음

[표 11] 홍콩의 특허등록건수		출처: 홍콩 특허청
연도	등록건수	20,000
2017	6,671	
2018	9,651	15,000
2019	6,780	10,000
2020	7,658	5,000
2021	14,655	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KOTRA 홍콩무역관이 발표한 '우리 기업의 홍콩 특허 출원 동향'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원수특허제도를 통한 표준 특허 출원에서 2020년 한국이 111건으로 외국 국가 중 1위를 기록함. 이는 기존의 재등록특허제도하에서 출원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해온 미국(8), 일본(5), 중국(20), 독일(2)의 출원량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며 홍콩 자국 내 원수 특허제도 출원 총수(94)를 상회함. 원수특허제도가 홍콩 내에서만 유효한 특허인 점을 볼 때 타 국가 대비 한국 기업의 압도적인 출원 건수를 통해 한국 기업이 홍콩 해외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KOTRA는 분석함

[표 12] 국가/지역별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한 표준특허출원 건수 통계 (단위 : 건)			출처 : 홍콩지식산권서, KOTRA
순위	국가/지역	2019	2020
1	대한민국	0	111
2	홍콩	5	94

3	중국	0	20
4	미국	2	8
5	일본	0	5
6	러시아 연방	0	3
7	호주	0	2
8	독일	0	2
9	이탈리아	0	2
10	영국	4	1

2. 주요제도

홍콩에서 특허권(전리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만 함. 비록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본토에 특허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서의 특허권에 기해 홍콩에서도 전리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음

- 홍콩에서 특허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홍콩에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등록받아야 함

가. 표준특허와 단기특허

홍콩에서 특허권 출원은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로 나뉨. 표준특허권은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단기특허의 최장유효기간은 8년이며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나고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됨

나. 특허의 출원

홍콩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특허로 출원할 것인가 단기특허로 출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일반적으로 표준특허는 중국, 영국, 유럽 출원을 반드시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또는 영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고 추가로 홍콩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이용됨. 또한, 표준특허는 최장 20년의 존속기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특허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음

단기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최장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존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음.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단기특허는 외국인들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지는 않음. 단기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반드시 중국, 영국, 유럽출원을 기초로 할 필요는 없지만, PCT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중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또는 영국특허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다. 특허출원의 언어

홍콩에서의 특허출원은 중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출원 서류에서 몇몇 사항들은 반드시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병기되어야 함

- 요약문(abstract)는 반드시 중국어와 영어 두 개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야 함
-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이름은 반드시 중국어와 영문자 알파벳으로 번역되어 표시되어야 함

라. 대리인 제도

(1) 특허 및 상표의 대리제도

홍콩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의 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처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누구든지 지식 재산권 출원의 대리를 할 수 있음

- 즉, 홍콩에 거류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홍콩의 지재권 대리인들의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지만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률 대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2) 공식적인 지재권 대리제도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및 대리인 선정 시 유의점

이와 같이,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누구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출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지재권 출원을 대리하기 위한 특허법 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의 지재권 대리인 선정에 있어서 특히 더 유의를 하여야 함

홍콩에서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 비록 홍콩이 대리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리인이 홍콩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임. 또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 대리 업무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만약 자격이 없고 홍콩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리인에게 출원 업무의 대리를 맡길 경우 자칫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실제로 많은 홍콩의 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명함에 변리사/변호사로 오해할 수 있는 직함들을 인쇄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특허대리,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홍콩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법적으로 특허 대리 자격을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하며, 법률 전문가가 내 사건을 담당하여 대리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함

마. 전자출원 서비스

홍콩 지적재산권부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류 등을 제출하려면, 우선 지적재산권부의 전자 서비스 고객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모든 전자서비스 고객은 문서 송달에 필요한 홍콩 주소를 제출해야 하고, 홍콩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전자출원 서비스 관련 자료는 지적재산권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s://iponline.ipd.gov.hk

■ 관련 사이트

- 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상세 자료
- http://www.ipd.gov.hk/chi/forms_fees/patents.htm
- 관련 첨부문서와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 http://www.ipd.gov.hk/chi/intellectual_property/patents/how_to_apply.htm
- 홍콩 지적재산권 공보
- http://www.ipd.gov.hk/chi/ip_journal.htm
- 인터넷 검색 서비스
- http://ipsearch.ipd.gov.hk
- 전자 출원 서비스
- https://iponline.ipd.gov.hk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특허 출원 절차

가. 표준특허 출원(재등록제도)

(1) 표준특허출원의 2단계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짐

- · 제1단계 (first stage) 기록청구단계(**记录请**求, request for record) · 제2단계 (second stage) 등록비준청구단계(册与批予**请**求,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

홍콩에서 재등록제도에 의해 표준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함

(2) 지정특허출원(기초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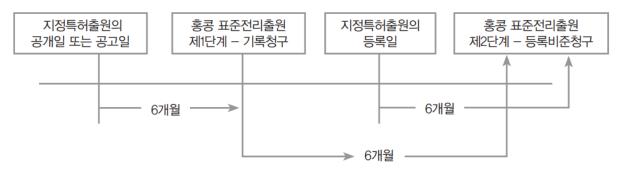
또한, 재등록제도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은 출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함. 이를 홍콩에서는 지정특허(指 定专利)출원이라고 함

- 표준특허 출원의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될 수 있는 출원은 반드시 아래의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이루어진 특허출 원이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본토)의 특허청에 제출된 중국전리출원
- 영국특허청에 출원된 영국특허출원
-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유럽특허출원

(3) 기록청구단계 - 표준특허 출원의 제1단계

기록청구단계는 홍콩지식산권서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반드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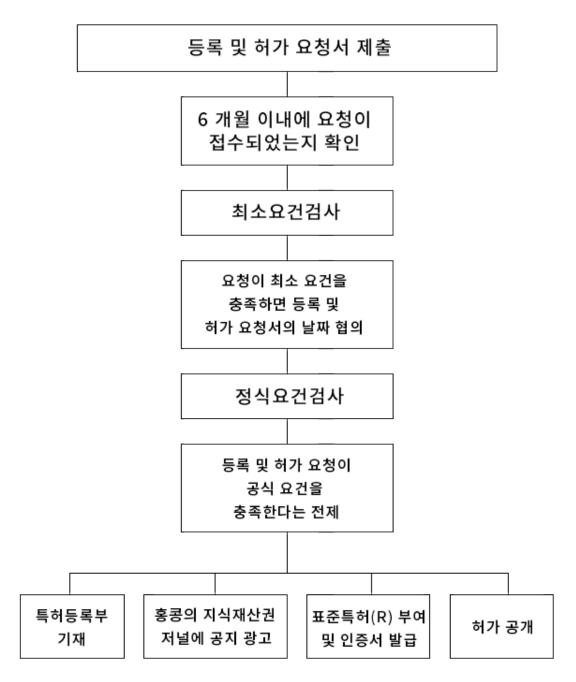


[그림 2] 홍콩 재등록제도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 절차

기록청구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기록청구서
- 공개 또는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의 사본
- 발명의 명칭 : 영문과 중문 모두 기재
- 요약서 : 영문과 중문 모두 요구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 지정특허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홍콩표준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다를 경우 양도증
- 지정특허출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자를 홍콩표준특허출원에서 추가할 경우 추가된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것에 대한 성명서
-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국가와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 공지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사전 공지된 전시회, 박람회 등에 관련된 사항 및 공지일자
- 홍콩에서의 주소 또는 거소(만약, 홍콩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출원료 380HKD와 공고료 68HKD임. 기록청구를 제출하면, 즉 표준특허를 홍콩에 출원하면 [그림 3]과 같은 절차가 진행됨



[그림 3] 홍콩 표준특허출원 절차 (출처: 특허청, KOTRA)

즉, 기록청구 제출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면, 홍콩지식산권서의 방식 심사관은 먼저 지정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청구가 제출된 것인지 확인함. 만약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라면 우선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함. 최소한의 방식 요건이란 홍콩지식산권서에 표준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한 것임

-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관은 표준특허의 출원일인 기록청구 제출일자를 확인하여 통지함
- 그 후, 심사관은 표준특허 출원의 기록청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방식상의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만족할 경우 후속 조치들을 취함

이어지는 후속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1) 홍콩지식산권서의 표준특허 출원등록부에 등재함
- 2) 표준특허 출원의 기록청구 사실을 공고함. 일종의 출원공고에 해당함.
- 3) 홍콩지식산권서가 발간하는 지식재산 저널에 기록청구가 표준특허출원 기록청구가 접수되었음을 게재하여 광고함

4) 출원인에게 표준특허 출원의 기록청구가 공고되었음을 통지함 상기와 같은 표준특허 출원의 제1단계인 기록청구 단계가 완료되면, 이후로는 표준특허 출원의 제2단계인 등록비준청구 단계가 진행 됨

(4) 표준특허 출원의 유지 청구

표준특허 출원의 제1단계인 기록청구 단계가 완료된 후 기초출원인 지정특허출원이 상당 기간 동안 등록 결정이 되지 않아 상당 기간 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 계속 중에 표준특허 출원의 유지 청구를 해야 함

홍콩 전리조례에 의하면 기록청구의 공고가 난 후 5년이 지나도록 제2단계인 등록비준청구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특허 출원의 유지 청구를 해야만 함. 만약 유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표준특허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 표준특허 출원의 유지 청구는 홍콩지식산권서의 서식 patent form P9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됨

나. 표준특허 출원(원수특허제도)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한 표준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출원인은 홍콩지식산권서에 일반특허 실질심사 신청 및 출원 신청(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 of a standard patent application)을 할 수 있음. 수수료는 4,000 HKD임

다. 단기특허 출원

단기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최장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존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음. 단기특허 제도는 외국인들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짧은 존속기간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국특허청, 영국특허청, 또는 PCT 조사기관 등의 서치리포트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표준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표준특허도 무심사 제도를 취하고 있어 굳이 표준특허 대신 단기특허를 취득해야 할 시간적, 비용적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기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반드시 중국, 영국, 또는 영국을 지정한 유럽출원을 기초로 할 필요는 없지만, PCT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중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또는 영국특허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제출해야하는 요구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1) 서치리포트 제출

단기특허출원은 표준특허와 달리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PCT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중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또는 영국특허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출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출원의 시기적 제한

단기특허 출원은 기초출원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원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은 없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부분 한국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또한, 중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출원의 경우에는 PCT 출원이 국내 단계에 진입하고 6개월 이내에 단기특허를 출원해야 함

(3) 공지예외주장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홍콩에 출원하여야 함. 이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해주는 요건이 우리나라와 홍콩은 상이하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우리나라는 현재 공지예외주장에 있어서 공지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 지만, 홍콩이나 중국은 반드시 중국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전시회에서 공지한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지한 경우에는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특허권을 받는 것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며, 중국이나 홍콩에서 특허권 획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지하기 전체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함

(4) 단기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단기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단기특허 등록청구서
- 단기특허 출원 명세서(설명서, 도면, 청구범위)
- 발명의 명칭 : 영문과 중문 모두 기재
- 요약서 : 영문과 중문 모두 요구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 서치리포트 (중국특허청, 영국특허청, 유럽특허청, PCT 조사기관)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닐 경우 발명자 신고 관련 서식(전리서식 P6A, 부록참조)
-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국가와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 공지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사전 공지된 전시회, 박람회 등에 관련된 사항 및 공지일자에 대한 서면 증거
- 홍콩에서의 주소 또는 거소(만약, 홍콩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단기특허 출원 관납료

단기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료 755HKD와 광고게재료 68HKD를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특허 심사 절차

가. 표준특허 심사

(1) 등록비준청구 단계 – 재등록제도를 이용한 표준특허 출원의 제2단계

표준특허출원의 제1단계인 기록청구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제2단계인 등록비준청구 단계가 진행되어야 함

- 등록비준청구 절차는 제1단계인 기록청구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또는 지정특허출원의 출원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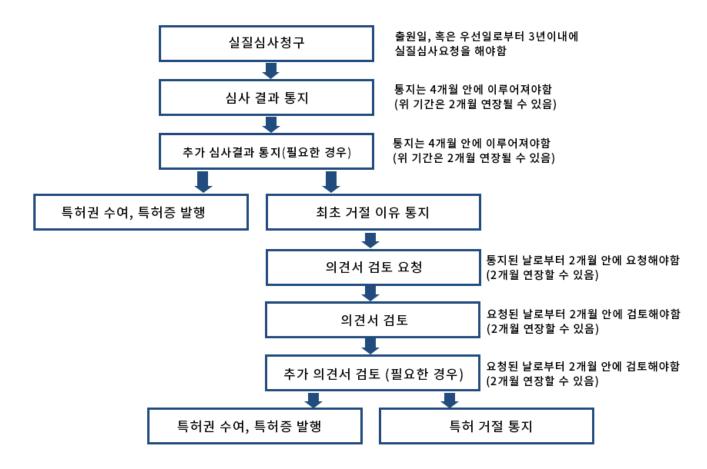
등록비준청구를 위해서는 청구료 380HKD와 공고료 68HKD를 등록비준청구와 함께 또는 등록비준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함. 등록비준청구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 먼저 등록비준청구의 청구서를 필요한 서류 및 관납료와 함께 홍콩지식산권서에 제출함
 - 등록비준청구서 (patent form p5 서식 참조)
 - 공개 또는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의 사본
 - 발명의 명칭 : 영문과 중문 모두 기재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 지정특허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홍콩표준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다를 경우 양도증
 - 홍콩에서의 주소 또는 거소(만약, 홍콩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 등록비준청구가 제출되면 우선 심사관은 상기 등록비준청구가 앞에서 설명한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심사함
- '3)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우선 판단함
- 여기서 최소한의 방식 요건이란 표준특허출원의 등록비준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이 될 수 있음
- 4) 판단 결과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비준청구 제출일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방식 요건들을 모두 심사함
- 5) 심사 결과 나머지 방식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홍콩지식산권서의 특허등록부에 등재하고, 홍콩 표준특허 등록 결정서를 송부함
- 6) 그리고 홍콩 표준특허 등록 공고를 내고 홍콩지식산권서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관련 저널에 게재하여 광고함 위와 같이 표준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출원이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2단계에 걸친 기록청구, 등록비준청구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밟아야 함

(2)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한 표준특허 출원의 심사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표준특허를 출원한 경우, 형식심사는 물론 발명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홍콩지식산권서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야함.

실질심사시 홍콩지식산권서는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포함한 심사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원수특허 제도하 표준특허의 심사 절차는 아래의 [그림 6]와 같음



[그림 4] 원수특허제도에 따른 표준특허 실질 심사 절차 (출처: Marks&Cle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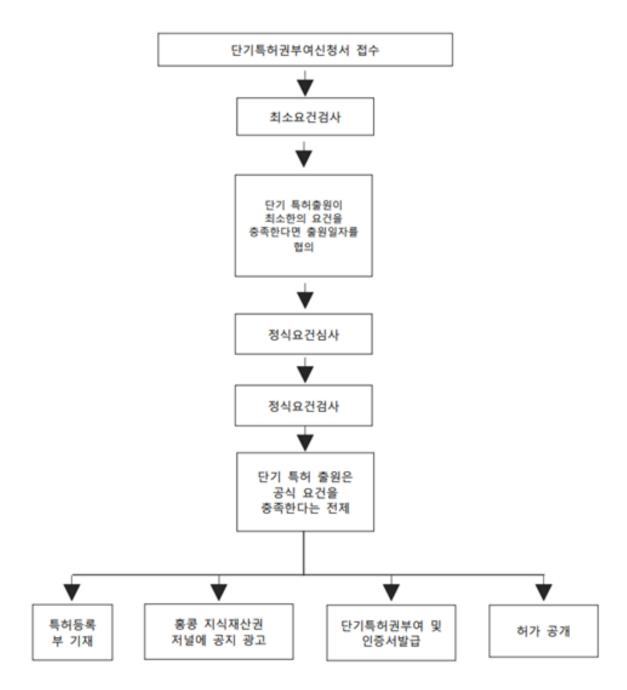
나. 단기특허 심사

(1) 단기특허출원 등록의 연기

단기특허 출원의 경우 등록을 연기할 수 있음. 최장 단기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연기 가능함

(2) 단기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

단기특허가 홍콩지식산권서에 출원되면 다음의 도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절차로 심사가 진행됨



[그림 5] 홍콩 단기특허출원 절차 (출처: 특허청, KOTRA)

- 1) 먼저 단기특허출원의 출원서 및 명세서를 관납료와 함께 홍콩지식산권서에 제출함
- 2) 단기특허출원이 제출되면 우선 심사관은 단기특허출원이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우선 판단함. 여기서 최소한의 방식 요건이란 단기특허출원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이 될 수 있음
- 3) 판단 결과 최소한의 방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단기특허출원의 출원일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방식 요건들을 모두 심사함
- 4) 심사 결과 나머지 방식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홍콩지식산권서의 특허등록부에 등재하고, 홍콩 단기특허 등록결정서를 송부함
- 5) 그리고 홍콩 단기특허 등록공고를 내고 홍콩지식산권서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관련 저널에 게재하여 광고함

다. 소요기간

홍콩지식산권서는 전리출원의 심사 처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신속한 등록업무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음. 하지만, 표준특허와 단기특허에 대하여 최장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고 다만, 최단 처리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음

(1) 표준특허

재등록제도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은 2단계의 절차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출원서류에 흠결이 없고, 방식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기록청구단계에서 약 3개월, 등록비준청구단계에서 3개월 정도 안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출원인 지정특허출원에 대한 등록 여부가 빨리 결정된다면 최단 6개월 정도에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 단기특허

홍콩지식산권서는 단기특허에 대하여도 출원서류에 흠결이 없고, 방식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단 3개월 정도면 특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라. 특허의 무심사제도에 따른 유의점

홍콩의 특허제도의 특징은 표준특허와 단기특허의 두 가지 전리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과, 원수특허제도에 의한 표준특허 출원을 제외한 재등록제도 표준 특허 출원, 단기 특허 출원시 자체적으로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을 하며, 실체심사는 중국, 유럽, 영국의 심사결과를 차용한다는 것에 둘 수 있음

즉, 중국이나 영국의 출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 전리출원을 할 경우 시기적인 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음

(1) 표준특허 출원 시 지정 기간 관리

재등록제도에 의한 표준특허출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의 공개일과 등록결정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함. 기록청구의 경우 지정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비준청구의 경우에는 지정특허출원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록청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함 ([그림 2] 참조)

(2) 공지예외주장 기간의 관리

중국과 홍콩은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두고 있으나, 공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거의 공지예외주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음

해외지식재산가이드북_홍콩

중국이나 홍콩에서 공지예외주장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지가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나 전시회에서의 공지이어야만 함. 즉,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지를 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국이나 홍콩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봐야 함

- 따라서 중국이나 홍콩에서 전리 획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공지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홍콩 정부에서 부여된 특허는 홍콩 정부에서만 보호됨. 홍콩 정부 특허 시스템은 본토 또는 다른 지역의 다른 특허 시스템과 별개임. 홍 콩에서는 표준 특허 또는 단기 특허로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음

- 표준 특허는 최대 20년간 보호됨
- 단기 특허는 최대 8년간 보호됨

발명에 대해 최대 20년의 더 긴 특허 보호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을 통해 표준특허(standard patent)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수특허제도 경로: 홍콩 정부에 직접 표준 특허에 대한 "원수 특허(original grant patent)를 신청하는 경로 ("표준 특허 (O)")
- 재등록특허제도 경로 : 홍콩 정부가 지정한 홍콩 외 지역 특허 사무소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이전에 출원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특허 ("표준 특허 (R)") 재등록(re-register) 경로

2. 효력 및 활용

특허 소유자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

- 경쟁자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명령 (injunction)을 받을 권리
- 특허권자의 특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침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 (damages or account of profits)을 받을 권리
- 침해 대상의 이전 또는 폐기에 대하여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로열티 및 기타 지불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의 특허 사용을 허가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부여 할 수 있는 권리
- 특허를 판매 할 권리
- 유언장에 특허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자의 제품과 포장에 특허 된 것으로 표시 할 수 있는 권리

특허를 신청했고 출원이 보류 중인 경우, 예를 들어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특허가 출원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 및 포장에 표시 할 수 있음. 기업은 이를 유용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 특허 출원이 철회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더 이 상 제품 또는 포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한 청구는 민사 및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4절 비용

1. 출원, 심사 비용

가. 표준특허출원비용 (재등록특허제도 경로 출원)

[표 13] 홍콩 표준특허출원(재등록특허제도 경로 출원) 시 관납료		
설명	청구료(HKD)	공고료(HKD)
기록청구료	380 (전자출원시 275)	68 (납부기일 도과시 \$95 추가)
등록청구료	380 (전자출원시 275)	68 (납부기일 도과시 \$95 추가)
기록청구 또는 등록청구 또는 공고료의 늦은 납부에 대한 추가 수수료	95	-

나. 표준특허출원비용 (원수특허제도 경로 출원)

[표 9] 홍콩 표준특허출원(원수특허제도 경로 출원) 시 관납료		
설명	청구료(HKD)	공고료(HKD)
출원청구료	480 (전자 출원시 345)	68 (납부기일 도과시 \$95 추가)
실질심사청구료	4,000	-
의견서 검토 청구료	1,700	-

다. 단기특허출원

[표 15] 홍콩 단기특허출원 시 관납료		
설명	청구료(HKD)	공고료(HKD)
출원료	755	68
출원료 늦은 납부 추가 수수료	95	-
단기특허 갱신료	1080	-
갱신료 늦은 납부 추가 수수료	270	-
단기특허 회복 신청료	405	-
단기특허 실질심사청구료	4,000	-

라. 대리인 비용

표준특허출원과 관련한 대략적인 대리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대리인 비용은 10개 홍콩 대리인의 비용을 분석하여 그 범위를 기재하였음

[표 16] 표준특허출원 대리인 비용			
항목	대리인 서비스 비용(HKD)		
기록청구	2500~3000		
등록청구	2500~3800		
기록청구 또는 등록청구 또는 공고료의 늦은 납부	380		
표준특허 유지료(5번째 해 만료 후 추가적인 1년에 대한) 납부	380~1500		
표준특허 유지료 납부(그 이후 다음 해에 대한)	380~1500		
유지료 늦은 납부 추가 수수료	380		
표준특허 갱신료(3번째 해 만료 후 추가적인 1년에 대한) 납부	790~2300		
표준특허 갱신료(그 이후 다음 해) 납부	790~1950		
표준특허 갱신료의 늦은 납부	380		
유지료 불납으로 인한 취하 간주된 표준특허의 회복 신청	1500~2000		

또한, 단기특허출원의 대략적인 대리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대리인 비용은 10개 홍콩 대리인의 비용을 분석하여 기재하였음

[표 17] 단기특허출원 대리인 비용		
항목	대리인 서비스 비용(HKD)	
출원	3100~7800	
단기특허 갱신료 납부	780~1500	
갱신료의 늦은 납부	390~500	
단기특허 회복 신청	1500~2000	

2. 등록. 연차료

[표 18] 홍콩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 등록 및 갱신료		
설명	청구료(HKD)	공고료(HKD)
단기특허 등록료	755 (전자출원시 545)	68 (납부기일 도과시 \$95 추가)
표준특허 갱신료	- 4년차~10년차 : 450 - 11년차 ~ 15년차 : 620 - 16년차 ~ 20년차 : 850 (납부기일 도과시 \$270 추가 납부)	
단기특허 갱신료	1,080 (납부기일 도과시 \$270 추가 납부)	
표준특허 유지료 (5번째 해 만료 후 추가적인 1년)	270	-
표준특허 유지료 (그 이후 다음 해)	270	-
유지료 납부기일 도과시 추가 수수료	95	-
표준특허 갱신료 (3번째 해 만료 후 추가적인 1년)	540	-
표준특허 갱신료 (그 이후 다음 해)	450	-
유지료 불납으로 인한 취하 간주된 표준특허의 회복 신청료	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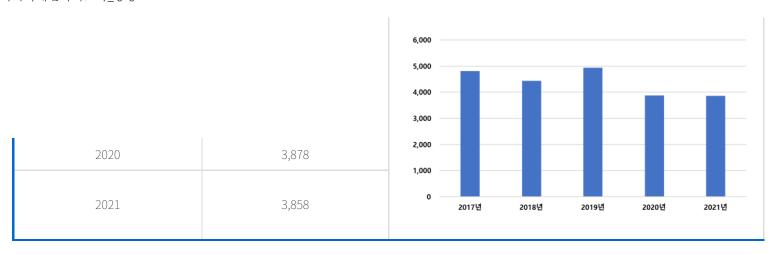
PARTIV 디자인

제1절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1. 출원현황 통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의 디자인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0] 홍콩의 디자인 출원건수	
연도	출원건수
2017	4,816
2018	4,435
2019	4,947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에서 디자인 등록된 건수를 살피면 다음과 같음



2. 주요제도

가. 등록요건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요구됨. 홍콩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공지예외를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보통 공식적인 국제 전시회에 해당하는 전시회에 디자인을 전시하고, 전시회 개막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전시회는 많지 않음

나. 출원 준비 서류 및 비용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요구됨

D1 양식으로 작성한 디자인 출원서

- ·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 · 춬워류 및 공고류



Designs Form D1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design(s)

Registered Designs Ordinance (Cap. 522) Registered Designs Rules (Cap. 522A)

Important notes

General notes:

- a. This form is available in Chinese and English. Either Chinese or English can be used as the language of proceedings.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English unless otherwise stated. The language of proceedings will be in English.
- b. By submitting this form, you will be treated as having given consent to the Designs Registry and its service provider to copy or communicate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to any third party (in or outside Hong Kong) who assists or supports the Designs Registry in performing its functions under the Designs Ordinance, Cap. 522 and its subsidiary legislation.
- This form must be signed and dated.
-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any part on this form, please continue on an additional sheet. Number each additional sheet and state the number of additional sheet(s).
- e. Please enquire through the following means:
 - E-mail: enquiry@ipd.gov.hk
 - Internet homepage address: www.ipd.gov.hk
- f. The Registered Designs Ordinance, Cap. 522 and Registered Designs Rules, Cap 522A can be viewed at www.ipd.gov.hk.

2. Use of personal data:

Personal data collected by the Registrar of Designs ("the Registrar") in the forms filed with the Registrar will be used for the purposes set ou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Statement at https://www.ipd.gov.hk/eng/personal_information.htm.

3. Use of other information:

- a. The Designs Registry will use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y commercial enterprise or entity provided in this form and any document(s) filed in relation to it for processing your application, request or notice, and for the purposes of collection set ou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Statement at https://www.ipd.gov.hk/eng/personal_information.htm. They may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in full or in part, pursuant to section 70 of the Registered Designs Ordinance, Cap. 522 and section 55 of the Registered Designs Rules, Cap 522A. Such information may be accessed through the Internet.
- b. DO NOT include any business information of your own or that of third parties which you consider to be confidential or commercially sensitive. Where such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is form or any document(s) filed in relation to it, the Registrar will treat it an express and voluntary consent given by you and any such third party to disclosure of all such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spection.

Submission of application/request/notice:

- a. In person or by mail with the appropriate fee to the Registrar of Designs, 24/F, Wu Chung House, No. 213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The fee schedule can be viewed at http://www.ipd.gov.hk/eng/forms_fees.htm. Payment can be made in person by cash, or by sending a cheque/bank draft (in Hong Kong dollars which can be cleared in Hong Kong) made pay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b. This form can also be submitted electronically. For details, please visit IPD's e-Filing System.

[그림 6] 디자인 출원서 (양식 D1) (출처 : 홍콩지식산권서)

다. 작성언어

D1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음

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이 요구됨

① 디자인의 표현물(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

디자인을 나타내는 표현물, 즉 도면 또는 사진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디자인의 신규성 즉, 종래의 디자인과 차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을 D1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도면 또는 사진과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근거 자료가 됨

② 2차원적인 평면 디자인(섬유 등)의 경우 샘플 제출

2차원적인 평면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샘플을 제출할 수 있음, 샘플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샘플은 하나의 봉투 또는 패키지에 담겨질 수 있을 것
- 샘플의 크기는 30cm X 30cm를 초과하지 않으며, 봉투 또는 패키지를 포함한 샘플의 무게가 4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보관하기 위험하거나 또는 보관시 썩지 않을 것

라. 출원 단계 유의점

(1) 디자인의 표현물(도면 또는 사진) 작성 시 유의점

- ① 디자인의 표현물은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이어야 함. 다만 사진의 경우,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의 즉석 사진으로 찍은 결과물은 허용되지 않음. 만약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질이 좋은 A4 사이즈 용지에 사진을 접착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져서 제출할 수 있음
- ② 도면 또는 사진은 반드시 출원서류 양식에 함께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함
- ③ 용지는 단면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각 용지는 페이지를 표시하되 전체 페이지수를 함께 1/6, 2/6,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 야 함
- ④ 도면 또는 사진은 반드시 디자인의 대상 물품만을 표현하여야 함.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물체를 포함해서는 안됨.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물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도면의 보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⑤ 도면 또는 사진은 제품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한 수의 도면과 함께 사시도를 포함하여야 함
- ⑥ 도면 또는 사진은 물품의 모든 특징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선명하게 복사/복제될 수 있어야 함
- ① 단면도는 그것이 2차원적인 도면이나 사진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외부형상을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함. 외부에서 관찰되지 않는 내부의 상세한 형상을 나타내서는 안됨
- ⑧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일부분은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현하고,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여야 함
- ⑨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도면의 크기는 210mm X 297mm(A4 size)을 넘지 않아야 함. 도면에서 표현되는 선은 선명하고 반듯한 굵은 실선이어야 함
- ⑩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진의 크기는 210mm X 297mm(A4 size) 을 넘지 않아야 함. 또한 사진의 배경은 무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이 나타나서는 안됨
- ⑪ 사진을 종이에 붙여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풀을 사용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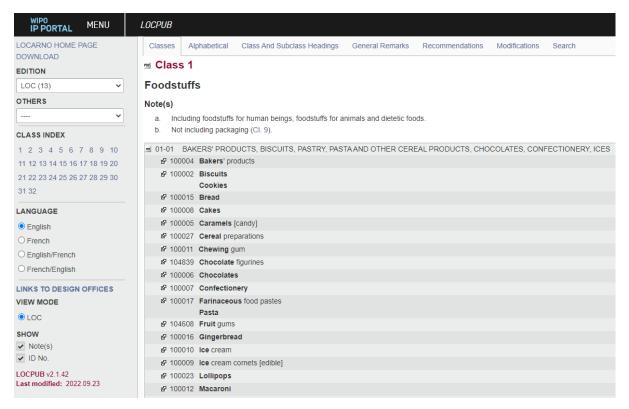
(2)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 작성 시 유의점

- ①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중국어와 영어 두 개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야 함
- ② 섬유제품이나 벽면지에 대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부분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3) 물품의 분류

디자인 출원 시에는 '디자인 국제 분류법(로카르노 분류)'에 따라서 출원되는 디자인의 물품 분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물품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로카르노 분류"를 열람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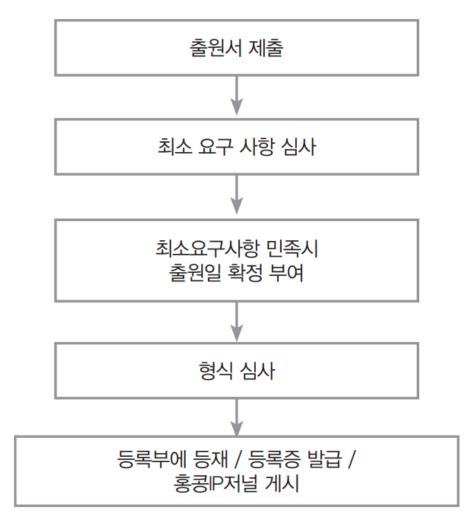
음(http://www.wipo.int/classifications/fulltext/locarno/)



[그림 7] 디자인 로카르노 분류 열람 화면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 출원 절차



[그림 8] 홍콩 디자인 출원 절차도

홍콩지식산권서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우선 홍콩지식산권서는 최소 요구 사항이 모두 만족되고 있는지를 심사함 - 최소 요구 사항이란 다음과 같음

- ① D1 양식에 의해 작성된 출원서가 제출되었는가?
- ②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이 제출되었는가?
- ③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D1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④ 납부되어야 할 출원 수수료와 공고료가 납부되었는가?

상기 사항이 모두 만족되었다면, 홍콩지식산권서는 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확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형식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됨. 만약, 상기 사항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상기 사항이 보완된 날이 출원일로 확정되게 됨

출원일은 권리 존속기간의 기산일인 동시에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시간적 판단 기준이 됨에 따라 상기 사항들이 누락됨 없이 출원 서류가 제출되도록 하여 출원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디자인 심사 절차

출원인에게 확정된 출원일을 통보한 후에는 홍콩지식산권서의 디자인 심사부는 디자인 출원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형식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됨. 홍콩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음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부에서는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선행 디자인에 대한 검색도 실시하지 않음

형식 심사 단계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형식에 대한 사항과 출원 서류 D1 양식의 기재 사항에 관한 것임. 제출 형식에 어긋난 출원인 경우에 심사관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의 기간 동안 흠결 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만약, 3개월의 기간 내에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 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취하 간주됨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가. 등록 절차

디자인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결과 모든 형식적인 사항이 만족된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등록 결정되고 등록 절차를 밟게 됨. 그리고 홍콩 지식재산 저널에 게시됨. 또한, 홍콩지식산권서는 출원인에게 디자인 등록증서를 발급함

나.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디자인 등록증서는 디자인 출원서의 출원일로부터 2달 이내에 발급됨. 상기 2달의 기간은 최소 요구 사항 심사나 형식심사 결과 별다른 흠결 사항이 없어서 별도의 거절이유 통지 없이 등록 결정이 났을 때의 예상 기간임

2. 효력 및 활용

가.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임. 매 5년이 만료될 때마다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5년까지 존속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

나. 디자인권의 지역적 범위

홍콩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은 홍콩 내에서만 유효함. 홍콩에서 등록받았다고 해서 중국 본토나 마카오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함 - 디자인 등록증서를 발급받은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무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홍콩지식산권서에서는 디자인출원의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항만 심사하여 등록시 키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홍콩지식산권서에서는 무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실체적 유효성을 다투는 별도의 절차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만약 제3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의 실체적인 유효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함. 더 나아가,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권리자는 별도의 실체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곧바로 제3자에게 침해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즉, 별도의 심사평가 절차 없이 즉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 침해 소송이 제기된 디자인권의 실체적 유효성은 소송 절차 내에서 다툴수 있고, 법원이 유효성에 대한 사안도 심리하여 판단하게 됨

제4절 비용

1. 출원, 심사 비용

가. 관납료

[표 22] 홍콩 디자인 업무 관납료		
설명	관납료(HKD)	
1 디자인 출원	785	
한 벌 물품에 대한 1 디자인 출원	1570	
한 벌 물품이 아닌 2 이상의 디자인 출원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물품만 가능)	785 / 최초 물품 590 / 추가 1 디자인 당	
한 벌 물품인 2 이상의 디자인 출원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물품만 가능)	1570 / 최초 물품 1180 / 추가 1 디자인 당	
홍콩 IP 저널 공고료	155	
디자인 조례 제21조 보정료	170	
디자인 조례 제67조, 디자인 규칙 제51조 보정료	170	
디자인 조례 제76조, 디자인 규칙 제62조 기재 오류 보정	170	

나. 대리인 비용

디자인출원과 관련한 대리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디자인 출원 비용은 10개 홍콩 대리인의 표준 fee schedule을 분석하여 기재하였음

[표 23] 홍콩 디자인 업무 대리인 비용			
설명	대리인서비스료(HKD)		
1 디자인 출원	4000~7700		
한 벌 물품에 대한 1 디자인 출원	4000~7700		
한 벌 물품이 아닌 2 이상의 디자인 출원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물품만 가능)	4000~7700 / 최초 물품 2000~6000 / 추가 1 디자인 당		
한 벌 물품인 2 이상의 디자인 출원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물품만 가능)	4000~9300 / 최초 물품 2000~6000 / 추가 1 디자인 당		
홍콩 IP 저널 공고료	400~780		
디자인 조례 제21조 보정료	400~780		
디자인 조례 제67조, 디자인 규칙 제51조 보정료	400~780		
디자인 조례 제76조, 디자인 규칙 제62조 기재 오류 보정	400~780		

2. 등록. 연차료

가. 관납료

[표 24] 홍콩 디자인 업무 관납료			
설명	관납료(HKD)		
디자인권 존속기간 1st 5년 연장	790		
디자인권 존속기간 2nd 5년 연장	1200		
디자인권 존속기간 3rd 5년 연장	1760		
디자인권 존속기간 4th 5년 연장	2690		
존속기간 연장기간 도과 후 추납기간 납부시 가산료	490		
존속기간 갱신청구기간 도과 후 청구에 대한 가산료	500		
서류 복사 신청	6 / 1페이지		
증명서류 신청	170 / 1부		

나. 대리인 비용

디자인출원과 관련한 대리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디자인 출원 비용은 10개 홍콩 대리인의 표준 fee schedule을 분석하여 기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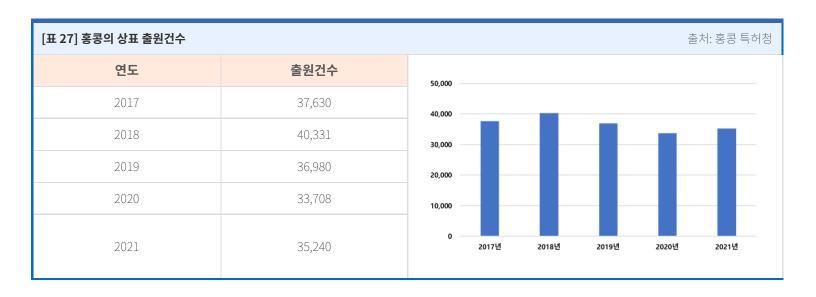
[표 25] 홍콩 디자인 업무 대리인 비용				
설명	대리인서비스료(HKD)			
디자인권 존속기간 1st 5년 연장	780~1560			
디자인권 존속기간 2nd 5년 연장	1170~1560			
디자인권 존속기간 3rd 5년 연장	1560			
디자인권 존속기간 4th 5년 연장	1560~2340			
존속기간 연장기간 도과 후 추납기간 납부시 가산료	390~1170			
서류 복사 신청	2.3~ / 1페이지			
증명서류 신청	388~620 / 1부			

PARTV 상표

제1절 상표 제도

1. 통계 및 동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의 상표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에서 상표 등록된 건수를 살피면 다음과 같음

[표 18] 홍콩의 상표 등록건수		출처: 홍콩 특허청
연도	등록건수	50,000
2017	35,488	40,000
2018	34,970	30,000
2019	33,371	20,000
2020	34,743	10,000
2021	32,719	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 주요제도

가. 등록요건

홍콩 상표법은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있음

- 절대적 거절이유는 지정상품이나 다른 기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유(주로 식별력)를 의미함
- 상대적 거절 이유란 지정상품이나 다른 제3자의 선행 상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거절 이유(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의미함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는 우리 상표법 제33조 및 34조에 규정된 등록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선행상표와 저촉 여부에 있어 홍콩 상표법은, 선행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이거나, 동일하더라도 상품 및 서비스업 군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이 선행상표와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상표 등록을 거절함

나. 회사 등록, 사업 등기, 상표등록의 차이점

(1) 회사 등록

회사등록은 홍콩의 회사조례(홍콩법 제32장)에 의하여 규정됨. 홍콩에 설립된 유한회사, 홍콩 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그리고 홍콩에 영업지를 설치한 외국법인 등은 홍콩의 회사조례에 따라서 회사 등록을 해야 함

(2) 사업 등기

사업 등기는 홍콩의 사업등기조례(홍콩법 제310장)에 의하여 규정됨. 사업 등기은 홍콩사업 등기서에서 할 수 있음.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홍콩사업등기서에서 등기를 해야함

(3) 상표등록

상표등록은 홍콩의 상표조례(홍콩법 제559A장)에 의하여 규정됨.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홍콩지식산권서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회사 등록이나 사업 등기를 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그 회사 이름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해주지 않음. 회사 등록이나 사업 등기는 그 상호에 대한 상표권의 획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반드시 별도로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아야 함

나. 출원 준비 서류

검색을 통하여 출원할 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정해졌다면, 상표출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상표출원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는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을 기재한 상표출원서이며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함. 상표출원서에 대해서는 아래 출원 절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함

다. 출원 단계 유의점

(1) 홍콩 지식산권서의 출원 전 사전 검색 서비스

홍콩지식산권서에서는 출원 전에 사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앞에서 설명한 홍콩지식산권서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직접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검색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직접 검색이 어색하고 힘들다면 홍콩지식산권서에서 제공하는 사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홍콩지식산권서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에 의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하여 사전 검색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상표의 식별력 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 서비스

또한, 홍콩지식산권서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식별력 유무를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조언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성질·품질·원재료·원산지·생산방법·가공방법 등을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원 전 미리 등록가능성 여부를 홍콩지식산권서로부터 조언 받아 상표출원 거절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서비스 이용방법

만약, 이 사전 검색 서비스 및 식별력 유무 예비적 판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출원 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을 기재한 사전 검색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수수료는 200 HKD임

라. 홍콩의 2003년도 상표조례 개정

홍콩은 2003년 전면적인 상표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표 제도의 틀을 크게 수정하였음. 개정 전에는 출원 전 사용상태 및 주지도에 따라서 part A 상표출원과 part B 상표출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상당히 복잡한 출원 요건 및 사용주의적 색채로 인하여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원인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음

- 홍콩은 2003년도 개정을 통하여 사용주의적 색채를 많이 배제시켰으며, part A 상표출원과 part B 상표출원을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통일하여 절차를 단순화함

마. 중국/대만/마카오/광동성 상표 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및 그에 따른 유의점

(1) 중국/홍콩/마카오/광동성 제도 비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주강삼각지 지역(The Pearl River Delta region, PRD)은 아주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냄. 현재 홍콩, 광동성, 마카오를 주된 요지로 하는 지역은 그 특유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잠재력 있는 경제 클러스터로 인정받고 있음

홍콩, 광동성, 마카오의 상표제도는 모두 다름. 홍콩과 마카오는 독자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제도 역시 별도의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상표권을 홍콩이나 마카오서 획득하려면 중국 본토와는 별도로 각각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받아야만 상표권을 획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한편, 광동성은 중국 본토의 상표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상표권을 획득하면 광동성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함. 즉, 광동성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본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 상표법의 지배를 받으며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표 28] 광동성/홍콩/마카오 상표 제도 비교					
	광동성	홍콩	마카오		
상표법	중국상표법	홍콩상표조례	공업산권법률제도 97/99/M 제3편		
출원 언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담당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홍콩지식산권서	마카오 경제부 지식재산부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7년		
특수상표의 인정	단체상표, 인증상표, 입체상표	단체상표, 인증상표, 소리상표, 입체상표, 냄새상표	단체상표,입체상표, 소리상표		
형사처벌	있음	있음	있음		

(2) 각 지역 별 유의점

(가) 광동성 지역

광동성 지역은 중국 본토의 정치·경제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중국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에 별개로 상표를 출원한다든지 또는 별도의 대리인을 위임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음

(나) 홍콩 지역

홍콩 지역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갖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의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홍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모든 권리에 대해 중국과는 별도의 출원을 절차를 밟아야 함

중국에서 획득했거나 마카오에서 획득한 권리는 홍콩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으며 저명상표로서의 인정 또한 중국 본토나 마카오에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받지는 못함. 따라서 모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전략을 중국과는 별개로 수립해야 하며 중국 대리인과는 별도로 홍콩의 현지대리인을 수임하